
'13년도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수행 지침

2013. 2.

목 차

I. 제작지원 대상 및 내용	1
II. 제작지원 조건	3
III. 심사 및 평가	4
IV.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6
IV. 중간 및 결과 보고	8

[양식]

1.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2.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3. 지원기업 현황자료
4.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확약서
5.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6.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7.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정산서

I.

제작지원 대상 및 내용

1. 시제품 제작지원 대상

가. 제작지원 대상

-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등의 제조분야에서 전과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또는 아이디어의 기술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에서 검색가능하거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함

나. 제작지원 대상 제외

- 이미 제품 제작이 시작 또는 완료되었거나 정부의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제외

2. 시제품 제작지원 내용

가. 제작지원 내용

-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제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제품의 제작비를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력, 사업성, 제품화 가능성, 제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나. 제작 기간

- 협약일로부터 '13. 11. 30.까지로 하며 수혜업체의 제작이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협회가 지정한 날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다. 제작지원 규모 및 자체부담금 비율

- 총 지원금 130,000천 원 규모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혜업체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0천원 이내로 지원금 배분
- 제작지원 금액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총 제작비의 50%이내, 자체부담금은 50%이상으로 함

라. 제작지원 조건

- 신청업체의 신청서 제출시 및 계약 체결시,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되며, 사업기간 내에 제작 완료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협회의 관련 규정과 동 사업 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됨
- 제작 완료 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작 과정 및 지원금 지출내역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제품화 여부, 특히 취득, 국내·외 판매실적 등에 대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반기 1회)

마. 기타 조건

- 신청서 및 계획서 상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협회 지원사업 참여 제재
-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부정사용 금액만큼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협회 지원사업 참여 제재
- 사업 협약후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제작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
-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II.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2013. 2. 27.(수) ~ 2013. 3. 22.(금) 18:00까지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지원기업 현황자료 원본 1부, 사본 5부

나. 참여확약서 1부

다. '10년, '11년, '12년 재무제표 사본 각 5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수처 : 158-80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목동 124-1)
한국전파진흥협회 산업전략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담당자
(TEL : 02-317-6143, e-mail : sjhwang@rapa.or.kr)

5.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심사 및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 구성

- 신청업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파방송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나.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거쳐 지원업체의 기술력, 사업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모 결과,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서 및 계획서에 대해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업체를 선정
 - 지원업체의 신청서 상의 거짓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예정

<서면평가 배점기준>

항 목	지 표	배 점
기술력 (40)	핵심기술의 난이도 및 완성도(특허, 신기술 등)	20
	유사 제품 대비 기술 경쟁력 보유	20
사업성 (30)	향후 기술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10
	제품 개발 시 시장성 및 상품성	10
	수혜업체의 마케팅 능력	10
수행능력 (30)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효율성	15
	수혜업체의 재정 안정성	15
합 계		100

-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신청금 대비 지원금 조정 및 최종 수혜업체를 선정

<발표평가 배점기준>

항 목	지 표	배 점
기술성 (40)	개발업체의 기술 개발력	20
	기술의 제품 구현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기술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파급효과	15
	사업 목표 및 비전	15
수행능력 (30)	사업비 신청 금액의 적정성	15
	인력, 장비 보유 등 제작 능력	15
합 계		100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할 시, 높은 배점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IV.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 협약체결

가.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작사는 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

가. 신청시기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작지원금의 80%, 나머지 20%는 최종 평가 완료 후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나. 제출서류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요율20% 적용)
-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부
- 계좌입금신고서(협약시 양식 별도공지) 1부
- 제작지원금 관리용 신규개설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시제품제작 협약서 2부(세부 작성내용 별도 공지)
- 클린행정협조서(협약시 양식 별도공지) 1부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 방문

○ 접수처 : 한국전과진흥협회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라. 참고사항

○ 사업비 관리용 신규 계좌 개설

-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의 계좌 개설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평가위원회에 의해 초기 신청한 지원금에서 차등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총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예시>

구분	총 집행금액	지원금	자체부담금
기존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변경 후	6,0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 초기 신청금액 보다 실제 지원금액이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라도 총 사업비 집행금액의 변경은 불허함
- 수혜업체의 자체부담금의 비율을 높여 총 사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야 함

V.

사업비 집행 지침

1. 사업비 집행기간

가.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집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3. 11. 30. 까지

2.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가. 각 수혜업체는 법인명의로 1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을 관리

3. 제작비 사용원칙 및 집행 잔액 반납

가.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는 직접적으로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총 제작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항목 >

사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형 설계 및 제작비- PCB Art-work- 회로설계 등○ 기타<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비- 부품구입비- 조립비- 장비 대여료- 성능 시험비 및 인증비※ 성능 시험비 및 인증비는 자체부담금으로 사용- 그 외 제작에 필요한 외주제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일체○ 기타<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취득비(장비구입비, 장비수리비)- 자가시설 이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 경비- 홍보비-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기타 해당 시제품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다. 사업비 집행계획 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라. 정산 시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전액 지원금으로 간주하고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정산 및 반납 방법 예시>

총 제작비(6,000만원)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인정금액	반납액
지원금	자체부담금					
3,000만원 (50%)	3,000만원 (50%)	6,000만원	0원	0원	6,000만원	0원
		5,900만원	100만원	0원	5,900만원	100만원
		5,900만원	0원	100만원	5,900만원	100만원
		5,9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800만원	200만원

4.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증빙종류	인정범위	추가증빙자료
현금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시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 자필 서명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계약서, 사용 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간이 영수증	○ 3만원 미만의 지출에 한함 ○ 총액 100만원까지 인정(단일 건에 대해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으로 분할 처리하는 경우 불인정)	사용내역서
카드사용 (신용체크) 증빙	사용 영수증	○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 사용내역서, ○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가. 사업비 증빙서류 원본은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나. 수혜업체는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다. 모든 지출은 행위 및 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VI.

중간 및 결과 보고

1. 중간보고

- 가. 보고 시기 및 횟수 : 협회와 수혜업체간의 협약 완료 후, 시제품 제작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격월 1회 중간보고 실시
 - o 협약 체결시 협회와 수혜업체간에 협의하여 보고일을 정함
- 나. 보고 방법 : 수혜업체의 공문과 붙임의 중간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본(우편, 또는 방문) 및 사본(파일 전송)을 협회로 제출
- 다. 제출 서류 : 공문, 중간보고서 원본 1부, 사본 파일
- 라. 기타 사항 : 중간보고서 검토 후 수정사항 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여 협회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수혜업체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야 됨

2. 결과보고

- 가. 보고 시기 : 각 수혜업체별 시제품 제작이 모두 완료되면 최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
 - o 평가위원회 실시 후, 협회와 수혜업체간에 협의하여 보고일을 정함
- 나. 보고 방법 : 수혜업체의 공문과 붙임의 결과보고서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결과보고서(우편, 또는 방문), 파일을 제출
- 다. 제출 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10부, 정산서, 사본 파일